

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6] <신설 2017. 3. 7.>

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시방법(제16조의2 제2항 관련)

1. 표시 단위 : 밀리리터 단위

가. 10ml 이상: 한자리 수 까지 표기(예: 15ml)

나. 10ml 미만: 소수점 한자리 수 까지 표기(예: 2.5ml)

2. 표시의 크기: 활자크기 10포인트 이상(다만,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적이
50cm² 이하인 경우에는 6포인트 이상)

3. 색상: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사용

4. 글자체: 고딕체